여비업무 처리기준

'21. 7

총 무 회 계 처 총무부

여비업무 처리기준

1. 여비의 계산 기준

가. 여비는 '일반적인 경로와 방법'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

일반적인 경로와 방법

- 육로 출장시 : 철도, 버스, 자동차(공사 지원차량 및 자가차 량)이용
- 육지~도서간 출장시 : 항공기 또는 선박 이용
- 나.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'일반적인 경로와 방법'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

●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
○ 폭풍·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
○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
○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철도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
○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한 경우
○ 이 밖에 출장명령권자의 판단에 따라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

2. 국외출장 중 통신비 인정범위(여비규정 제6조)

음성 및 문자	○ 국외출장중 공무상 이용하는 음성 및 문자서비스
데이터	 ○ 각 통신사별 일(日) 기준 제공 로밍서비스 상품 * SKT : T로밍 원패스 / KT :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/ LG : 스마트로밍 ○ 해당국가 해외 유심 구입비용 ○ 해당국가 포켓와이파이 대여비용 ※ 위 해당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조치, 적용하지 않고 자동로밍 후 사용하는 일반적인 '해외 데이터 사용 요금'은 인정하지 않음 * 과다한 해외 데이터 사용요금 본인 과실, 본인 부담 처리

3. 국외출장 중 국외여행자보험 보장 설정 기준(여비규정 제6조)

- : 국외출장 여행일수 기준으로 '보험사 차등플랜' 설정 권장
 - 외교부가 지정한 적색경보(철수권고), 흑색경고(여행금지) 지역 또는 내란, 전쟁발발 등 위험지역으로의 출장시, 보험사가 권고하는 '특별 플랜'은 설정 가능

출 장 일 수	보험사 해외여행보험 기준			
5일 미만	고고교계 시키			
5일 이상~10일 미만	표준플랜 이하			
10일 이상	고급플랜 이하			

* 표준플랜 예시(보험사별 표준플랜 보장기준은 상이하며 아래는 참고용)

구 분	보장기준	구 분	보장기준
상해사망	2억원 한도	수하물지연	20만원
질병사망/고도후유	2천만원	여행중단보상	20만원
휴대품 손해	1백만원	특정전염병보상금	20만원
해외상해 해외의료비	3천만원	특별비용	3천만원
해외질병 해외의료비	3천만원	항공기납치	140만원
배상책임	2천만원	식중독보상금	20만원

4. 국외출장 일비 산정 및 숙박비 초과지급(여비규정 제17조)

가. 국외출장 일비 산정(실제 국외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지급)

국외출장 일수(예 : 출장일정 10일, 가등급 뉴욕, 경유 1회 기준)									
D	D+1	D+2	D+3	D+4	D+5	D+6	D+7	D+8	D+9
항공출별	항공출발 → 도 항공출발						} → 도		
착		체류 착							
	[체류]	[체류]							
국내일 일비 지급일 8일 / 실제 국외체류기간 기준 국내일									

- * 국외출장 일비가 적용되지 않는 출발 및 도착일은 국내출장 일비 적용 나. 숙박비 초과 지급
 - <여비규정> 기준금액 한도의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,

전결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기준금액의 50%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

5. 숙박비 지급 제외(여비규정 제7조)

- 가.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
- 나.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경우, 숙박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(당해 직급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
 - ※ 호텔 등의 부대서비스 지급대상 제외
 - 룸서비스, 객실 내 전화사용, 호텔 비치 음료비용 등
 - ※ 숙박업소에서 숙박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였을 경우, 숙박비는 식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결제
 - 식비를 포함하여도 기존 숙박요금과 금액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

6. 국내여비 교통비 실비지급(여비규정 제7조, 제10조)

구	분	증빙서류
		○ 증빙 가능한 철도/버스 운임으로 교통비 대체
	통상적 이용	* 철도/버스 홈페이지 내 운임요금표 출력 후
		증빙
		단, 주유소매출전표, 통행료영수증, 주차장영수증 등 자기차량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
가. 자가차량	부 득이한 사유 여비규정 제11조 3항	○ 유류비 : 거리산출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
		* 네이버 지도 등 해당페이지 출력
		※ 자동차 연료비 지급기준
		* 이동거리(Km)÷표준연비×유류비단가(원/L)
		○ 통행료 : 하이패스 이용 영수증
		○ (법인, <mark>개인</mark>)신용카드매출전표
	(a)	* 법인카드 결제 후 정산
나. 실제 철도/버스 등을 이용 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(항공료는 법인카드 결제)		* 개인카드 사용후에는 연말정산시 총소득에서
		해당금액 차감
		○ (법인)현금영수증
		* 현금 지출 후 공사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
		증빙

7. 기타사항

개정된 <여비규정>의 '자가차량 이용', '교통비 실비 정산' 및 '동승 권고 및

동승자 교통비 미지급' 사항 등은 감사 지적 개선사항으로, 본사 및 지사 전결권자는 출장 결재시 '자가차량 이용'과 '동승의 적정성' 등 여비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함

8. 여비지급 금지(여비규정 제5조의 1)

개정된 <여비규정>의 동일사업장내 당일 출발 당일 복귀의 현장정비업무(변동 공사 포함)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요할시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※ 동일사업장이란 지사 단위를 말함

- ·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사에서의 현장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출장으로 보지 않는다.
- · 현장정비업무 수행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나, 부득이하게 개인차량 이용시 실비(유류비, 통행료)만 지급한다.
 - 유류비 : 거리산출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(* 네이버 지도 등 해당페이지 출력)
 ※ 자동차 연료비 지급기준 : 이동거리(Km)÷표준연비×유류비단가(원/1)
 - 통행료 : 하이패스 이용 영수증
- ·동일사업장을 벗어나 검교정, 외주가공, 워크샵, 회의참석 등은 출장으로 처리 가능하다.
- ·지사의 경우 사업소 및 분소에서 본부로 직무교육, 회의참석, 공기구 이송 등을 하기 위해 이동시 출장 적용한다.

9. 시행일: 20201.07.09부. 끝.

[사례해석]

1. 직원 A가 대전 본사에서 서울지사로 자가차량을 이용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는?

>> '부득이한 사유'가 아닌 '통상적 이용'의 경우, 전결권자 승인 후 기존과 같이 철도/버스 운임을 교통비로 대체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, 그 증빙은 철도/버스 운임이 명시된 운임요금표 출력물로 할 수 있다.

다만, <여비규정>제7조에 의거, "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지의 주유소매출전표, 통행료영수증, 주차장영수증 등 출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"하여야 하며, 동승자의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※ 증빙 불인정 사례

사 례	불인정 사유
출장지 출석부(교육, 세미나 등)	자가 차량이용 증빙 부적합
출장 전 주유전표	자가 차량이용 증빙 부적합
출장지 자가차량 주차 사진	위변조 사례 발생

- 2. 직원 A와 B가 출장 후 복귀 방향이 크게 달라 동숭이 어려울 경우 개인별 자가 차량 이용이 가능한가?
 - >> 전결권자의 검토 및 승인의 경우 가능하다. 단, 출장 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경우 A와 B의 개인별 자가차량 이용은 불가하다.
- 3. 자가차량 이용의 경우 실제 사용한 연료비와 통행비를 지급하는 '부득이한 사유'의 출장은?
 - >> <여비규정 제11조 3항>
 - 가. 산간오지,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
 - 나.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- 다. 업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라.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
 - 마. 가~마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

- 4. 직원 A가 '부득이한 사유'로 자가차량을 이용해 대전 본사에서 삼척기지지사로 여행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는?(휘발유차 기준)
 - >> 이동거리 : 대전 본사 ↔ 삼척기지지사간 거리 = 308Km
 - 표준연비 = 10.06(여비규정 기준)
 - 유류비단가 = 1,407원(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고시 / '17.9.24 기준) 하여 308Km÷10.06×1,407 = 43,077원을 지급한다.
 - ※ 이동거리는 '네이버 지도' 등 거리산출이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 최적거리 산출 → 출력 → 증빙
 - ※ 공사차량, 자가차량 관계없이 동승자의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음
- 5. 실제 철도/버스 등을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 운임 실비의 비용처리 및 정산은?
 - >> 여비 전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해당 운임을 결제하여야 하며, 비용처리시 회계 처리 매입창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끌어와 처리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경우, 본인 현금결제 후 공사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정산할 수 있다.
 - ※ 여비 전용 법인카드 지급 전까지는 부서 법인카드 사용
- 6. 실제 철도/버스 등을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시 정산은?
 - >> 본인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일 경우 본인 부담 공적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일 경우 회사 부담(관련증빙 첨부 필)
- 7. 직원 A가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아, 금요일 서울에서 공무일정을 마친 후 서울 자택에서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에 대전으로 귀임 하였을 경우 일요일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?
 - >> 받을 수 있다. 다만, 교통비 실비 결제시 평일에 귀임 교통편을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.
 - 8. 근무지내·외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식사가 포함된 경우,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?
 - >> 회의비, 잡비 등 다른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 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,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(3만원×1/3)을 감액 후 지급함

- 9. 1박2일 근무지외출장 중 식사(첫날 점심, 저녁, 다음날 아침)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방법은?
 - >>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함.
 - >> 사례의 경우 첫날에는 식비 정액분의 1/3을 식비로 지급하고, 다음날에 대해서는 식비 정액분의 2/3를 식비로 지급
- 10.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방법은?
 - >>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, 그 여비는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함.
 - >> 따라서 서울(거주지)에서 대구(목적지)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(근무지)에서 대구(목적지)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, 결국 대전↔ 대구의 운임비(예매사이트에서 금액 확인)를 지급하여야 함. 증거서류는 서울↔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.
- 11. 제주에 근무하는 직원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(6.8~6.11) 3박4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으며, 개인적인 사유로 월요일(6.7)에 휴가를 사용하였다.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은 금요일(6.4) 제주에서 공무일정을 마치고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며 출장일정을 마친 후 월요일(6.14)에 제주 근무지로 복귀하였다. 이때 직원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?
 - >> 받을 수 있다. 다만, 교통비 실비 결제시 평일에 교통편을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.
- 12.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, 근무지내출장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?
 - >>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복무 처리함. 다만,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,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내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